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23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0. 6. 11.

발 의 자: 오현숙 의원 외 5 인

1. 제안이유

주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수탁자 선정 및 운영 등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
- 위원수는 9명 이하로 하고,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로 함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28조 및 제31조